교통안전관리규정

2025. 07. 01. 최초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 교내에서 일어나는 교통 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, 원활한 교통안전관리와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하며,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등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"교통관리"란 대학 내「자동차관리법」제3조에 해당하는 자동 차의 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관리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교내 도로에 적용하고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이륜자동차, 자전거 등의 이용자 및 보행자에게 적용한다.

제4조(보행권 우선) ①대학의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보행자는 모든 차량보다 우선권을 가진다.

②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협하게 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.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먼저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.

제2장 교통관리

제5조(교통관리 주관부서) 교통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와 도로 및 교통시설물의 설치, 보수, 관리는 관리팀에서 주관한다.

제6조(속도제한) 대학 내의 도로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 속도는 20 km/h 이하로 제한한다.

제7조(운전자의 의무) ①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.

②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대학의 도로를 운행할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제동, 급가속을 해서는 아니 된다.

③모든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여야 한다.

④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 규칙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, 총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·공고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8조(피해자의 구호조치) ①대학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관련자와 목격 자는 신속하게 관련 부서 및 소방서,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고, 피해자 구호조 치 및 추가 사고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 사고 관련자, 목격자 등은 사고발생 장소, 사상자의 수, 부상 정도 및 재산 피해사항을 학생은 학생팀으로, 그 밖의 사람은 관리팀으로 신고한다.

제9조(정차 및 주차금지) ①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정해진 주차공간에 다른 차량의 이동 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하여야 한다.

-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.
- 1. 교차로·횡단보도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
- 2.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
- 3. 「소방기본법」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과「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
- 4. 그 밖에 대학에서 정차 및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곳
- ③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와 원활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 정차 또는 주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이동을 명할 수 있다.
- 제10조(운행의 제한) 주차 면수에 비하여 대학에 출입하는 차량이 현저히 증가하거나, 주차 및 통행 질서의 확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 5부제 등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.
- 제11조(충전시설) ①대학 내에 전기 차량의 충전시설은 탐구관(8동)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다.
- ②차량을 충전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충전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, 충전시설 이용 방법 및 충전요금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여 고지한다.

제3장 교통안전시설

- 제12조(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) ①교내에서 자동차 등이 운행할 수 있는 구간에는 교통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과속방지턱과 경사로에는 미끄럼방지포장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교내에 자동차의 운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밝기의 조명을 설치한다.
- ③교내 도로면에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바닥표시와 교통안내판을 설치· 관리한다.

제4장 지도 감독 및 운영

- 제13조(지도 단속) ①교내의 교통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단속반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②지도 단속 시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, 규정 속도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현장에 서 시정조치 할 수 있다.
- 제14조(제재조치 등) ①매학기 기준 학교 구성원이 자동차 등의 운행 시 교내 규정 속도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1. 1회 위반 : 계도 조치
 - 2. 2회 위반 : 계도 조치 및 부서(학과)에 통보

3. 3회 이상 위반 : 학교 내 3개월 운행 금지

②외부 자동차 등은 교내 규정 속도를 1회 이상 위반하면 계도 조치를 할 수 있고,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다.

제5장 비상차량 동선 계획

제15조(비상차량 등) ①교내 도로는 비상 시 비상차량의 신속한 통행이 언제나 가능하도록 유지·관리한다.

②「소방기본법 시행령」에 의거 소방차량 전용구역(6*12m)을 교내에 설치하며, 이곳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교내 비상 상황이 발생시 비상차량 동선계획도(첨부1)에 의거 관리·유지한다.

제16조(진입 동선) ①교내 각 건물의 출입구까지 비상차랑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비상차량 통행로는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회차 가능해야 하며, 건물의 2개면 이상 비상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.

③비상 진입로에 볼라드 설치 시 잠금장치 없는 이동식 또는 탈착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
④교내 비상차량 동선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경 및 시설물 등을 배치하거나 설치하여서 는 아니 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비상차량 동선계획도

